

「구미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, 주민투표청구에 전자서명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한 주민투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함.

3. 주요내용

- 재외국민 관련 규정 정비(안 제2조, 제7조제1항, 제8조)
-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자 연령 규정 삭제(안 제3조)
-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 삭제(안 제4조)
-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 추가(안 제7조, 제9조)
- 통·리·반 단위로 청구인서명부 작성(안 제7조제2항)
-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 및 운영관련 규정 정비(안 제11조~제14조)
- 부칙개정 및 서식 수정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주민투표법」

-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의: 정책기획과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타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

- 「주민투표법」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,

- 검토 결과,

- 본 조례안은 조례의 모법인 「주민투표법」이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한 재외국민 관련 사항,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및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을 반영하여 상위법과 체계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